

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13
----------	-----

2023년 7월 5일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3. 5.30.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3. 회부일자 : 2023. 6. 1.
4. 상정일자 :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3. 6.27.)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(2023. 6.30.)
   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   - 원안가결

## 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)

- 의안번호 제901호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일

### 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##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13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####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##### 1)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감액되어 2023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##### 2) 주요내용

- 가. 변경사유 : 2022년도 예치금 1,711백만원 감액으로 인한 2023년도 수입·지출계획 변경
- 나. 2023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○ 수입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<b>수 입 합 계</b>	<b>25,249,497</b>	<b>23,538,334</b>	<b>△1,711,163</b>	<b>△6.8</b>
경상적세외수입	421,172	421,172	-	-
이자수입	421,172	421,172	-	-
보전수입등	15,228,325	13,517,162	△1,711,163	△11.2
융자금원금수입	8,529,000	8,529,000	-	-
<b>예치금회수</b>	<b>6,699,325</b>	<b>4,988,162</b>	<b>△1,711,163</b>	<b>△25.5</b>
내부거래	9,600,000	9,600,000	-	-
전입금	9,600,000	9,600,000	-	-

○ 지출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정책·단위·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<b>지 출 합 계</b>	<b>25,249,497</b>	<b>23,538,334</b>	<b>△1,711,163</b>	<b>△6.8</b>
인적자원 역량 강화	18,000,000	18,000,000	-	-
공무원 복지증진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18,000,000	18,000,000	-	-
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	18,000,000	18,000,000	-	-
행정운영경비(행정국 인력개발과)	7,000	7,000	-	-
기본경비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7,000	7,000	-	-
기금관리비	7,000	7,000	-	-
<b>재무활동(행정국 인력개발과)</b>	<b>7,242,497</b>	<b>5,531,334</b>	<b>△1,711,163</b>	<b>△23.6</b>
보전지출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7,242,497	5,531,334	△1,711,163	△23.6
예치금	7,242,497	5,531,334	△1,711,163	△23.6

### 3. 검토의견

- 동 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이 △17억 1,100만원 감액되어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△17억 1,100만원)와 지출계획중 예치금(△17억 1,100만원)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한 감액분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<sup>1)</sup>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,
  - 행정안전부의 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<sup>2)</sup>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수입계획)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(지출계획)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  -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△23.6%, △17억 1,100만원 감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 됨
- 동 기금의 예치금이 당초 지출계획보다 감소된 것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용자사업인 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 사업은 선정자에게 기본 2년, 2회 연장으로 최대 6년까지 전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어 상환인원보다 연장인원이 증가하여 '22년도 결산결과 지출계획중 예치금(△17억 1,100만원)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행정안전부, 「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'22. 7), p.296

##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 A )	기 금 운 용 계획변경안 ( B )	증 감 ( C=B-A )	증 감 륜 ( D=C/A )
지출합계	25,249	23,538	△1,711	△6.8
인 적 자 원 역 량 강 화	18,000	18,000	-	-
재 무 활 령 개 발 과 동 ( 행 정 국 인 력 개 발 과 )	7,242	5,531	△1,711	△23.6
보 전 지 출 ( 공 무 원 주 거 안 정 기 금 )	7,242	5,531	△1,711	△23.6
예 치 금	7,242	5,531	△1,711	△23.6
행 정 운 영 경 비 ( 행 정 국 인 력 개 발 과 )	7	7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지출계획, ②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수·지 운용계획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<sup>3)</sup>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3)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금의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공무원 주택전세자금의 용자
2.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
3.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안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## 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## 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### 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### 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#### 1) 소위원회 구성

- 일 자 : 2023. 6.27.(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(의회별관 2층)
- 위원구성 :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(11명)
  - 위 원 장 : 이성배(주택공간)
  - 부위원장 : 강동길(주택공간), 김영옥(보건복지)
  - 위 원 : 송경택(행정자치), 김지향(기획경제),  
이영실(환경수자원), 이종배(문화체육관광),  
박철성(도시안전건설), 김영철(도시계획균형),  
김용일(도시계획균형), 경기문(교통)

#### 2) 소위원회 예산안 심사

##### 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29.(목) 14:00 ~ 16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3. 6.30.(금) 12:00 ~ 1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참 석 : 소위원회 위원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안 등 조정 소위원회 운영

**VI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**

**VI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2023. 6.30.)**

# 2023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

#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91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이 감액되어 2023년

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

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

의결을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변경사유 : 2022년도 예치금 1,711백만원 감액으로 인한

2023년도 수입·지출계획 변경

나. 2023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○ 수입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수입합계	25,249,497	23,538,334	△1,711,163	△6.8
경상적세외수입	421,172	421,172	-	-
이자수입	421,172	421,172	-	-
보전수입등	15,228,325	13,517,162	△1,711,163	△11.2
융자금원금수입	8,529,000	8,529,000	-	-
<b>예치금회수</b>	<b>6,699,325</b>	<b>4,988,162</b>	<b>△1,711,163</b>	<b>△25.5</b>
내부거래	9,600,000	9,600,000	-	-
전입금	9,600,000	9,600,000	-	-

○ 지출계획 변경안

(단위 : 천원)

정책·단위·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<b>지 출 합 계</b>	<b>25,249,497</b>	<b>23,538,334</b>	<b>△1,711,163</b>	<b>△6.8</b>
인적자원 역량 강화	18,000,000	18,000,000	-	-
공무원 복지증진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18,000,000	18,000,000	-	-
공무원 주택전세금 지원	18,000,000	18,000,000	-	-
행정운영경비(행정국 인력개발과)	7,000	7,000	-	-
기본경비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7,000	7,000	-	-
기금관리비	7,000	7,000	-	-
<b>재무활동(행정국 인력개발과)</b>	<b>7,242,497</b>	<b>5,531,334</b>	<b>△1,711,163</b>	<b>△23.6</b>
보전지출(공무원주거안정기금)	7,242,497	5,531,334	△1,711,163	△23.6
예치금	7,242,497	5,531,334	△1,711,163	△23.6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완료(원안가결)

※ 작성자 : 행정국 인력개발과 후생팀 오정은 (☎ 2133-5771)